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2. 17 선고 2019가단1129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

담당변호사 김윤석

피 고 채무자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의 소송수계인 A

변론 종결 2021. 1. 13

판결 선고 2021. 2. 1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,371,488원 및 그중 18,537,388원에 대하여 2018. 9. 28.부터 2018. 11. 21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2016. 12. 2. 원고와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 을 체결하고,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20,000,000원, 보증기한 2021. 12. 1.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,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 한다)으로부터 2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,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(2015. 6. 1.부터 2018. 1. 31.까 지는 연 12%, 2018. 2. 1. 이후는 연 10%)로 계산한 지연손해금,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.

다.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,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. 9. 28. C에 18,537,388원(=원금 18,304,000원 + 이자 233,388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

한편,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1,834,100원을 지출하였으나,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.

라.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1182, 2018하면118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,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. 1. 25.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면서 B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.

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2019. 3. 25.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 데, 위 파산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. 9. 25. 파산폐지결정을 하였고, 위 파산폐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 이에 따라 피고가 2020. 10. 30.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.

[인정근거]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원고에게 20,371,488원(=대위변제금 18,537,388원 + 법적절차비용 1,834,100원) 및 그중 대위변제금 18,537,38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. 9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. 11. 21.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0% 의,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태경